

『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4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4월 26일

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종 율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(시행 2018. 1. 1.)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,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,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납세자보호관의 설치, 선발,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7조)
-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, 제9조)

-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~ 제19조)
-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0조 ~ 제23조)
-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4조 ~ 제28조)
-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9조, 제30조)
-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1조, 제32조)
-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33조 ~ 제3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,
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예산관련 : 기준인건비 범위 내 운영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○ 본 『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』은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, 세무상담,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, 납세자권리헌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범위와 운영절차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